

배합사료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사료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유통질서 확립 선포식



“우리는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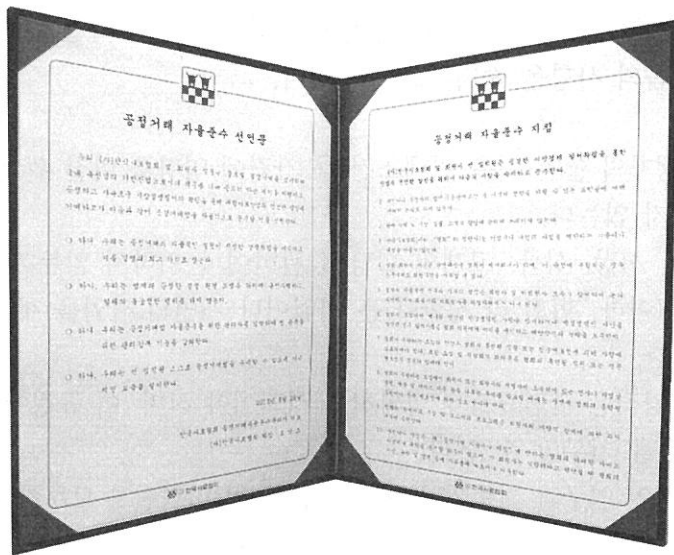
한국사료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지난 5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결의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사료협회와 회원사 일동은 “국내 축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배합사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것”을 강조했다.

또 경쟁사의 할인·이윤·판매조건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물론 판매 지역 및 시장, 상품, 고객의 할당 등에 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비롯한 10개항에 이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을 채택했다.

조남조 회장은 이날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이야말로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며 사료협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계기로 축산업과 사료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고 말하고 협회는 물론 회원사의 공정거래 준수를 강조하였다.

[사]한국사료협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우리 한국사료협회 및 회원사 일동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축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 배합사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이를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하나, 우리는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자를 임명하여 법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 하나, 우리는 전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2013년 5월 28일

(사)한국사료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대표
(사)한국사료협회 회장 조 남 조

(사)한국사료협회 공정거래 자율 준수 지침

한국사료협회 및 회원사 전 임직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1. 본인이나 경쟁자의 할인·이윤·판매조건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다.
2. 판매 지역 및 시장, 상품, 고객의 할당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
3. 한국사료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는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
4. 협회 회원의 자격은 관련규정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누구에게도 회원자격을 거부할 수 없다.
5. 협회의 기술적인 연구와 기준의 설정은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협회의 모임에서 제기된 안건이 반경쟁적인 사항을 암시하거나 반경쟁적인 사안을 발 견한 경우 참석자들은 협회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안건의 누락을 요구한다.
7. 협회가 주관하는 모임의 안건은 협회의 훈련된 직원 또는 전문변호인에 의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모임 및 위원회의 회의록은 협회의 훈련된 직원 또는 전문 변호인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8. 협회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회원사 또는 회원사의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사가 사업 상 관행, 제품 및 서비스 기준 등을 다루는 주제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협회의 훈련된 직 원이나 전문 변호인에 의해 검토 받아야 한다.
9. 협회의 통계자료 수집 및 보고서의 프로그램은 회원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과거 내 역에 국한한다.
10. 개인이나 기업은 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에 반하는 협회의 어떠한 가이드라인 이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각 회원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협회의 기준, 규칙 및 정책 등에 자유롭게 따르거나 거부한다. ☒

알 림

본회가 추진해온 2013년도 하반기 사료용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품목이 다음과 같이 확대됐다.

※ **동식물성유지(5→0%), 비트펄프(5→0%), 면실피(5→0%)**